조선후기 군영둔토의 연구와 양안

서 태 원*

1. 머리말
2.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1)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 양안
  2) 장용영 양안
  3) 평신진·수영 양안
  4) 총리영·총위영·무위소·친군영·통위영 양안
3. 군영둔토 양안의 기재에서 나타난 특징
  1) 折과 冒
  2) 自作
4. 맺음말

1. 머리말

둔토는 군영이 荒蕪地·陳田 등을 개간 경작하여 軍需에 충당하는 토지인 군영둔토는 물론이고, 중앙의 各司나 지방의 邑 등이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설치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1)]

조선후기 둔토에 대한 연구는 1970년 정창렬의 연구[2)]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었다.[3)] 그리하여 둔토는 '無主地의 折受·開墾을 통해 성립된 사적 지주제인가[4)] 아니면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잔존 또는 변형인가'[5)]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2-A00005)
** 목원대학교 강사
1) 김양식, 2000『근대권력과 토지 : 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28~29면 ; 송양섭, 2006『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1면.
2) 정창렬, 1970「조선후기의 둔전에 대하여」『이해남박사화갑기념논총』.
3) 조선후기 둔토의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송양섭, 앞의 논문(2006), 3~12면이 참고가 된다.
4) 이경식, 1973「17세기 농지개간과 지주제의 전개」『한국사연구』9 ; 이경식, 1987「17세기 토지절수제와 職田復舊論」『동방학지』54·55·56 ; 이경식, 1993「조선후기의 柴場私占과 火田經營」『동방학지』77·

만, '제2종 有土에서 나타나는 중층적 소유구조,[6] 지대형태의 변화가 농민의 농업생산에 미친 변동의 양상,[7] 18~19세기 중앙 營·衙門 둔토의 설치와 존재실태,[8] 국역편제와 재정운용과 관련된 둔전의 설치·확대·경영실태 및 둔민의 존재양태와 저항에 대한 군문과 아문의 대응'[9] 등이 밝혀졌다. 아울러 개별연구도 이루어져 1795년(정조 19) 華城修城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華城屯田(大有屯田)의 서유구 둔전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10] 간척지인 石場屯에서의 '소유권 부여와 확립, 租 100斗型 장토의 운영, 토지소유분화, 19세기말 지주제의 강화 양상' 등이 해명되었다.[11] 특히 조선후기 군영둔토에 관해서는 장용영 둔전의 '설치시기·지역·규모, 조성 방법, 운영상 문제점, 장용영 혁파 후 처리' 등이 밝혀졌고,[12] 總衛營 양안을 활용하여 19세기 중반 전라도 전주부·익산군 소재 총위영 둔토내에서 경영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둔전민은 소수의 상농층과 다수의 하농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13]

하지만 조선후기 군영둔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을뿐더러 양안을 활용한 연구도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규장각과 장서각 등에 보관된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 51건을 중심으로 첫째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군영둔토 양안의 기재에서 나타난 특징을 '折과 冒, 自作' 등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군영둔토를 둘러싼 지대나 소유권 분쟁에서의 屯田民과 정부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파악해보려 한다.

78·79.

5) 박준성, 1984「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한국사론』11, 서울대 국사학과 ; 이영훈, 1988「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전개과정과 소유구조」『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 宮嶋博史, 1991『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6) 이영훈, 앞의 책(1988), 188~200면.

7) 이영호, 1984「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 : 宮庄土·屯土를 중심으로」『한국사론』11, 서울대 국사학과.

8) 김양식, 앞의 책(2000), 28~47면.

9) 송양섭, 앞의 책(2006).

10) 염정섭, 1996「정조 후반 수리시설의 축조와 둔전경영 : 華城城役을 중심으로」『한국학보』82.

11) 이영호, 2009「조선후기 간척지의 소유와 운영 : 경기도 안산·인천 石場屯 사례」『한국문화』48.

12) 송찬섭, 2001「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32.

13) 박진태, 1984「조선후기 아문둔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은 51건이 작성되어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에 대해 '군영명칭과 작성년도(수)·해당지역(수)·소장처(수)'에 대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14]

작성년도(수)·해당지역(수)·소장처(수) / 군영명칭		작성년도(수)			해당지역(수)	소장처(수)
		1709~1799년	1800~1888년	미상		
訓鍊都監		2		1	황해도 봉산군(2) 충청도 보령현(1)	규장각(3)
摠戎廳		2	1		황해도 봉산군(2) 황주목(1)	규장각(3)
守禦廳		1			황해도 재령군·신천군(1)	규장각(1)
壯勇營		27	3	1	경기도 가평군(1) 남양부(1) 안산군(1) 양근군(1) 진위현(3) 수원부 (1) 함경도 단천부(1) 평안도 박천군(4) 정주목(8) 황해도 봉산군(7) 충청도 은진현(1) 충주목(1) 전라도 임피현(1)	규장각(31)
平薪鎭		2	2		충청도 서산군(2) 태안군·면천군(1) 면천군(1)	장서각(4)
水營	忠淸水營		1		충청도 보령현·홍주목·결성현(1)	장서각(1)
	全羅左水營		1		전라도 순천부(1)	규장각(1)

14) 군영별로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를 살펴볼 때 전거가 제시되므로 여기에서는 전거를 생략하였다.

摠理營		1		황해도 평산부(1)	규장각(1)
總衛營		2		전라도 전주부(1) 전주부·익산군(1)	규장각(2)
武衛所		1		경상도 김해부(1)	장서각(1)
親軍營		2		평안도 함종부(1) 강화부 (1)	규장각(2)
統衛營		1		경기도 진위현·양성현(1)	규장각(1)
합 계	34	15	2	51	규장각(45) 장서각 (6)

즉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의 수는 51건으로, 장용영 양안 31건을 비롯하여 '훈련도감 3건, 총융청 3건, 수어청 1건, 평신진 4건, 수영 2건(충청수영 1건, 전라좌수영 1건), 총리영 1건, 총위영 2건, 무위소 1건, 친군영 2건, 통위영 1건'이었다. 작성년대가 미상인 2건을 제외한 49건의 군영둔토 양안은 1709~1799년 34건 및 1800~1888년 15건이 작성되었는데, '1793년 7건, 1788년 5건, 1792·1794년 각각 4건, 1827년 3건, 1803·1847년 각각 2건, 1709·1719·1791·1795·1798·1800·1856·1871·1875·1881·1883·1887·1888년 각각 1건'이었다. 군영둔토가 위치한 도는 '황해도 14, 평안도 13, 경기도 10(수원·강화유수부 포함), 충청도 8, 전라도 4, 경상도 1, 함경도 1'곳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 군영둔토가 많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은 규장각에 45건 그리고 장서각에는 6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어 조선후기 군영을 '5군영인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 가장 많은 군영둔토 양안이 남아 있는 장용영, 수군인 평신진과 충청수영·전라좌수영, 19세기에 창설된 군영'으로 구분하여,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훈련도감 · 총융청 · 수어청 양안

조선후기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은 금위영·어영청과 함께 중앙의 5군영이었다. 훈련도감이 급료병을 활용하여 국왕의 시위 및 도성의 방어를 담당했다면, 총융청·수어청은 경기도 군인을 주축으로 하여 도성의 외곽 방어를 담당하였다. 조선후기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훈련도감[15] · 총융청[16] · 수어청[17]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 군영명칭	둔토의 설치지역	작성 년도	작성 이유	결수	두락수
훈련도감	황해도 봉산군	1792	교환	전답 14.097	
	황해도 봉산군	1792	교환	전답 14.097	
	충청도 보령	미상			
총융청	황해도 봉산군 黃柄串	1793	교환	전답 20.282 (纛田 0.893 포함)	
	황해도 봉산군 黃柄串	1793	교환	전답 23.424 (蘆田 0.692 포함)	
	황해도 松林·慕聖坊	1856		전답 15.141 (蘆田 0.692 포함)	61석 19두 2승락
수어청	황해도 재령·신천	1709	買得	답 40.866 實畓 39.625	實 183석 4두락

우선 훈련도감 양안의 실태와 작성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훈련도감은 1593년(선조 26) 창설된 중앙군으로,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국왕의 侍衛 및 도성의 방위 등을 담당하였다.[18] 훈련도감 양안은 3건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1792년(정조 16) 작성된 黃海道 鳳山郡 黃柄串의 양안 2건[19]과 작성년대를 알 수 없는 충청도 보령의 靑蘿洞 양안[20]이 바로 그것이다. 훈련도감의 부속기관인 糧餉廳에도 군병의 服色·器械·旌旗·金鼓를 造繕하거나 各色 員役의 料布를 마련하기 위해 둔전이 설치되었으나,[21] 1649년(인조 27) 이후 5~6천여 명에 이른 훈련도감 군인의 軍需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둔전

15) 『黃海道鳳山郡黃柄串所在訓局換屯田畓打量成冊』(奎 18544), 『黃海道鳳山郡黃柄串所在訓局換屯田畓打量成冊』(奎 18642), 『保寧靑蘿洞田案』(奎 19348).

16) 『黃海道鳳山郡黃柄串所在摠戎廳換屯田畓量案成冊』(奎 18543), 『黃海道鳳山郡嵋山坊所在摠戎廳換屯田畓量 案成冊』(奎 18643), 『黃州松林坊慕聖兩坊地界十二浦坪摠戎屯畓量案』(奎 18585).

17) 『本廳買得黃海載寧信川兩邑三橋野兩牛山加山處伏在堰畓字號負主名縣成冊』(奎 18539).

18) 『宣祖實錄』 卷 41, 26년 8월 庚子, 22책, 78면 ; 『宣祖實錄』 卷 41, 26년 8월 癸卯, 22책, 79면 ; 車文燮, 1973 「宣祖朝의 訓鍊都監」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大出版部 ; 李謙周, 1976 「壬辰倭亂과 軍事制度의 改編」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後期編』, 육군본부 ; 尹用出, 1989 「壬辰倭亂 시기 軍役制의 동요와 개편」 『부대사학』13 ; 金鍾洙, 2003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 訓鍊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혜안.

19) 『黃海道鳳山郡黃柄串所在訓局換屯田畓打量成冊』(奎 18544), 『黃海道鳳山郡黃柄串所在訓局換屯田畓打量成冊』(奎 18642).

20) 『保寧靑蘿洞田案』(奎 19348).

21) 『萬機要覽』, 財用編 四, 糧餉廳, 屯土.

이 추가로 설치[22]되는 가운데 3건의 훈련도감 양안도 작성된 것이다.

황해도 봉산군 黃柄串 訓局 양안 2건은 작인의 기재여부만 다를 뿐 내용이 같은 양안으로, 1792년 이천의 각시동둔과 교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23] 봉병곶 훈련도감 田畓의 합은 14결 9부 7속이었고, 이천의 각시동둔은 知殼官과 旗牌官이 1년씩 교대로 관리하였고 매년 약 150냥을 軍餉色에 납부한 바 있다.[24] 아울러 충청도 保寧 靑蘿洞 훈련도감 양안에 수록된 전답은 『萬機要覽(1808년)』에 기재된 靑蘿洞屯과 일치하였는데, 청라동둔은 1736년(영조 12) 훈련도감이 매입한 다음 知殼官과 旗牌官으로 하여금 1년씩 교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답의 소출 중 약 130냥을 징수하여 鳥銃色에 稅로 납부하도록 하였다.[25] 그런데 청라동둔이 위치하였던 청라면에 친군영의 田 1결 35부 6속 및 畓 26결 23부 7속이 설치되었던 것을 1896년 작성된 친군영 양안을 통해 알 수 있는데,[26] 1882년 훈련도감이 혁파된 후 친군영이 창설되고 훈련도감과 친군영은 모두 중앙군이었으므로 훈련도감의 둔토였던 청라동둔이 친군영으로 이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萬機要覽(1808년)』에 기재된 훈련도감 둔전은 '加羅洞屯 春川, 甘勿岳屯 洪川, 水邊山屯 楊根, 桴破峒屯 安州, 望毛老屯 嘉山, 江月浦屯 博川, 靑蘿洞屯 保寧, 覺時洞屯 利川, 禿山屯 安岳, 延津屯 安岳, 南二里屯 康翎, 泉站面屯 坡州, 馬山屯 載寧, 泉二面屯 豐川, 赤火峴硫黃站 忠州, 靑川面硫黃站 西原, 德裕山硫黃站 安義'[27] 등 17곳이다. 이중에서 경기도 利川의 覺時洞屯은 黃海道 鳳山郡 黃柄串 훈련도감 양안에 나오는 둔토와 교환되었고, 보령의 靑蘿洞屯은 청라동 양안의 둔토와 일치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훈련도감 양안은 둔토의 수에 비해 매우 적게 파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는 장토문적이나 목장 양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內需司庄土文績』(奎 19307) 16책 「圖書文績類」의 문서번호 8'에는 1803년(순조 3) 작성된 『訓局屯田量案』이 들어 있는데, 이 양안에 기재된 평안도 안주·가산·박천의 훈련도감 둔토 8곳 중에서 田 173日 5時半畊인 박천 강월포둔과 畓 15석 6두락 및 田 4日 5時畊

22) 金鍾洙, 앞의 책(2003), 137~210면.
23) 『萬機要覽』, 軍政編 二, 訓鍊都監, 諸屯.
24) 『萬機要覽』, 軍政編 二, 訓鍊都監, 諸屯, 覺時洞屯.
25) 『萬機要覽』, 軍政編 二, 訓鍊都監, 諸屯, 靑蘿洞屯.
26)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20),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10).
27) 『萬機要覽』, 軍政編 二, 訓鍊都監, 諸屯.

인 안주 부파동둔은 『만기요람』에 수록된 훈련도감 둔토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司僕寺 牧場地가 훈련도감으로 이속되는 비율이 높았고[28] 충청도 평신진 둔전처럼 목장을 혁파하여 屯土로 만든 경우가 많았으며,[29] 1895년(고종 32) 작성된 경기도의 목장양안에는 訓局의 折受田이 수록되었다는 점[30]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총융청 양안의 실태와 작성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총융청은 1624년(인조 2) 창설되어 1884년 폐지될 때까지 남양·파주·장단 등의 경기도 군대를 중심으로 도성의 북쪽 외곽 방어를 담당하였고, 守禦廳·鎭撫營·壯勇營 등의 창설과 관련하여 편제나 소속 읍의 변화가 있었으나 군액은 15,000~21,000여 명이었다.[31] 총융청 양안은 3건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답의 합이 20결 28부 2속인 黃海道 鳳山郡 黃柄串 총융청 양안[32]과 전답의 합이 23결 42부 4속인 黃海道 鳳山郡 嵋山坊의 총융청 양안[33]은, 1793년(정조 17) 다른 둔전과의 교환을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어느 곳의 둔토와 교환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이 없었다. 아울러 黃州 松林坊·慕聖坊의 총융청 양안에서 전답의 합은 15결 14부 1속이었고, 전체 두락수는 61석 19두 2승락이었다.[34]

그런데 『만기요람』에 기재된 총융청 둔전 25곳[35] 즉 '長湍一屯, 長湍二屯, 朔寧屯, 廣州屯, 麻田屯, 陽城屯, 稷山屯, 水原屯, 德池屯(永柔·肅川), 鳳山屯, 積城屯, 靈巖·海南屯, 扶安屯, 西南新屯(坡州·長湍), 振威·陽城屯, 陽智屯, 洪州·德山屯, 咸平屯, 金海屯, 今勿屯, 通津屯, 富平屯, 江華屯, 平山屯, 臨津屯' 중에서, 규장각 소장의 총융청 양안과 일치하는 둔토는 1년의 세액으로 950냥을 총융청에 납부하는 봉산둔[36]뿐이었다. 따라서 3건의 총융청 양안도 『만기요람』의 둔전 25곳에 비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1856년 작성된 황해도 黃州 松林坊 양안은 『만기요람』에 나와 있지 않은 총융청 둔답이라는 점에서, 『만기요람』에 기재되지 않은 총융청 둔토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28) 송양섭, 앞의 책(2006), 59면.

29) 『備邊司謄錄』 181책, 정조 17년 3월 22일, 18책, 118~120면 ; 『備邊司謄錄』 181책, 정조 17년 3월 25일 계해, 18책, 120~122면.

30) 『京畿牧場量案』(奎 19124-v.1).

31) 『大典會通』 卷 4, 兵典, 京官職, 摠戎廳 ; 이태진, 1977 「중앙 오군영제의 성립과정」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 차문섭, 1982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 『한국사론』9(조선후기 국방체제의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21~17면 ; 최효식, 1995 「摠戎廳」 『朝鮮後期 軍制史硏究』, 신서원.

32) 『黃海道鳳山郡黃柄串所在摠戎廳換屯田畓量案成冊』(奎 18543).

33) 『黃海道鳳山郡嵋山坊所在摠戎廳換屯田畓量案成冊』(奎 18643).

34) 『黃州松林坊慕聖兩坊地界十二浦坪摠戎屯畓量案』(奎 18585).

35) 『萬機要覽』, 軍政編 三, 摠戎廳, 諸屯.

36) 『萬機要覽』, 軍政編 三, 摠戎廳, 諸屯, 鳳山屯.

끝으로 수어청 양안의 실태와 작성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1626년(인조 4) 도성의 남쪽 외곽 방어 및 避兵所의 구실도 할 수 있는 南漢山城이 개축되면서 수어청이 설치되었으며, 광주·양주·죽산 등 경기도 군병이 수어청 군인의 주축을 이루었다. 守城軍은 1663년(현종 4) 20,000여 인이었으며, 1795년(정조 19) 守禦京廳을 혁파하고 廣州留守로 하여금 南漢守禦使를 겸하게 하였다.[37] 수어청 양안은 규장각에 1건만이 소장되어 있다.[38] 이 양안에는 1709년(숙종 35) 수어청에서 買得한 황해도 재령과 신천 두 읍의 三橋野·兩牛山·加山 등에 있는 堰畓의 자호·결부수·本主名 등이 수록되었으며, 답의 전체 합은 40결 86부 6속이었다.

수어청 재령 둔전은 한 때 궁방이 折受함으로써 다툼에 휘말렸다가 1779년(정조 3) 수어청에 환원되었으며,[39] 같은 해 수어사 서명응이 말한 수어청 둔전 29곳 즉 '廣州 6곳, 果川 1곳, 龍仁 3곳, 陽智·永平·利川·砥平·原州·洪川·平澤·忠州·金海·昌原·扶安·長興·海州·定州·稷山·振威·永同·載寧·橫城 각각 1곳'[40]중에서 載寧屯만이 규장각에 소장된 재령·신천의 수어청 양안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1건의 수어청 양안은 1779년 수어사 서명응이 말한 수어청 둔전 29곳에 비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감이나 총융청에 비해서도 소수라는 점에서 장토문적·목장양안·각도공토안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수어청 양안과 관련해서는 1894년 갑오승총 이후부터 1907년 경리원 해체까지 만든 각도공토안이 주목된다.[41] 실제로 1896년 개정된 수어청 비인군 양안은 1895년 을미개혁으로 군영둔토의 관리권을 갖게 된 탁지부와 궁내부가 농상공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42] 탁지부 乙未陞總때 전답의 합 14결 67부 6속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1899년 작성된 황해도 연안군 수어청 屯畓의 공토안을 통해서도 『만기요람』에 기재되지 않은 수어청 둔토를 확인할 수 있고, 作人姓名·賭租實數 등을 파악할 수 있다.[43]

---

37) 『大典會通』 卷 4, 兵典, 京官職, 摠戎廳 ; 차문섭, 1996 「守禦廳硏究」 『朝鮮時代 軍事關係 硏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 서태원, 2006 「조선후기 廣州의 군사지휘체계 변천」 『실학사상연구』 29.

38) 『本廳買得黃海載寧信川兩邑三橋野兩牛山加山處伏在堰畓字號負主名縣成冊』(奎 18539).

39) 『正祖實錄』 卷 8, 3년 8월 甲寅, 45책, 113면 "上曰 予於丙申御極之初 命罷諸宮房折受 而深知載寧屯田與宮房相爭之弊 故特命還屬本廳 誠以軍餉體重 不可與宮庄相等故耳"

40) 『正祖實錄』 卷 8, 3년 8월 甲寅, 45책, 113면 "上曰 本營屯田幾何 命膺曰 屯田之在廣州者六處在果川者一處 在龍仁者三處 在陽智永平利川砥平原州洪川平澤忠州金海昌原扶安長興海州定州稷山振威永同載寧橫城者各一處 合爲二十九處矣"

41) 1894년 이후 둔토와 역토 등의 조사에 대해서는 김양식, 앞의 책(2000), 65~83면 ; 배영순, 2002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영남대학교 출판부, 98~105면 ; 김종준, 2009 「1895~1907년 평안도 지역의 '軍土' 조사 작업과 관련 분쟁」 『동방학지』 148, 252~255면이 참고가 된다.

42)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6) ;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25).

2) 장용영 양안

장용위는 1785년(정조 9) 국왕호위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어 1787년 장용영으로 발전하였고, 장용영은 1793년 도성 중심의 내영과 華城의 외영으로 나누어지면서 내영 3,000여 명 및 외영 20,000여 명으로 구성된 정조대 최대 군영이었다.[44] 장용영 양안은 장용영의 재정을 확보하고 장용영 군인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둔토가 설치되면서 작성되었는데, 장용영 양안은 31건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군영 둔토 양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장서각에 소장된 『忠淸道平薪屯量案』 2건[45]도, 평신진을 장용영 외영에 이속[46]시키면서 평신진 관할의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설치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 따라서 장용영 양안은 실제로는 33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신진 양안은 뒤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에서는 규장각 소장 31건의 장용영 양안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장용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47]

해당지역(수) \ 작성년도, 작성이유, 결수, 두락수(稅錢·賭租)			작성년도	작성이유	결수	두락수(稅錢·賭租)
경기도(8)	가평군(1)	朝宗上面, 西面	1788	이속(←가평군, 호조)	冒火田畓 59.030	(稅錢 608냥 1전)
	남양부(1)	禾尺之面, 雙守里面 등	미상		전답 4.738	19석 1두 9승락
	수원부(1)	今勿村面, 北方面 등	1827		전답 32.715	
	안산군(1)	郡內面, 草山面 등	1827		전답 4.092	
	양근군(1)	北面, 西終面	1788	이속(←훈련도감)	*柴場 周回 194里	(火田稅錢 457냥 5전)
	진위현(3)	縣內面, 二北面 등	1789	이속(←수진궁, 어영청, 숙원방 등)	전답 39.667	

43) 『黃海道延安本郡所在守禦屯畓各年所捧賭租實數及斗落卜數作人姓名成冊』(奎 20214).
44) 이태진, 앞의 책(1977), 202~219면.
45)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46) 『備邊司謄錄』 182책, 正祖 18년 9월 30일, 18책, 238면.

		縣內面, 二西面 등	1798	이속(위와 동)	전답 51.841	
		縣內面二北面, 城南 등	1800	이속(←양향청)	전답 72.140	
함경도 (1)	단천부 (1)	豆彦台牧場	1789	신설(개간)	전 9.101	
평안도 (12)	박천군 (4)	德安面 七里境	1790	신설	답 3.798	25석 4두 8승락
		東新筒	1792	신설(築筒)	답 7.209	48석 9승락
		德安面 新築筒	1794	신설(築筒)	답 5.578	37석 2두 8승락
		德安面 南新筒	1794	이속(←내수사,수진궁)	답 60.332	402석 3두 2승락
	정주목 (8)	大明洞 二里	1788	신설	盧田·淤泥 197.399	1,320석 10두 9승락
		大明洞 下一里	1788	신설	蘆田 1.978	13석 8두 3승락
		大明洞 一筒,二筒	1790	신설(築筒)	답 20.089	133석 13두 9승락
		大明屯築筒	1791	신설(築筒)	답 19.714	131석 6두 4승락
		大明屯築筒	1792	신설(築筒)	답 20.201	168석 1승락
		24筒	1792	이속(←정주목)	實畓 25.289	297석 7두 3승락
		大明屯築筒	1793	신설(築筒)	답 31.360	209석 1두락
		沙筒	1793	신설(沙筒畓)	답 5.859	39석 9승락
황해도 (7)	봉산군 (7)	沙院坊 大廣串, 新峒 등	1793	신설	纛田 0.997	
		沙院坊, 土城坊, 西湖坊등	1793	신설	전답 41.518	
		媚山沙院坊	1793	이속(←수진궁)	전답 122.256	
		沙院坊, 土城坊, 西湖 등	1793	교환(→수진궁)	전답 41.257	
		舍人房	1793	교환(→수진궁)	전답 86.994 蘆田 44.125	
		媚山屯(新買)	1794	買得	전 1.871 實田 1.816 實畓 0.045	
		媚山屯 水留坪	1795	신설	전답 4.715	
충청도 (2)	은진현 (1)	金浦面, 花山面	1796	신설	전답 2.275	(賭租 13석 1두 5승)

	충주목 (1)	居谷面	1788	신설	전답 7.309 (築堰畓 0.849)	
전라도 (1)	임피현 (1)	縣內面, 東一面 등	1796	신설	답 5.795	10석 10두락 (賭租 40석 13두)
도·부·목·군·현(31)					합계 전답 1031.557 柴場 周回 194里	

즉 먼저 장용영 양안 31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안도가 12건(박천군 4건, 정주목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8건(가평군, 남양부, 수원부, 안산군, 양근군, 진위현 3건), 황해도 7건(봉산군 7건), 충청도 2건(은진현, 충주목), 전라도 1건(임피현), 함경도 1건(단천부)'이었다. 이어 전답이 4결 73부 8속으로 작성년도가 미상인 경기도 남양부 양안[48]을 제외한 장용영 양안 30건의 작성년도를 알아보면, 1793년(정조 17) 7건을 비롯하여 '1788년 5건, 1792·1794년 3건, 1789·1790·1796·1827년 각각 2건, 1791·1795·1798·1800년 각각 1건'이었다. 장용영 양안은 둔토의 신설·이속·교환·매입 등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는데, 작성이유를 알 수 있는 28건 중 17건이 둔토를 신설한 후에 작성되었다. 이어 8건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둔토가 이속된 후에 그리고 1

47) 『加平郡所在壯勇營柴場四標成冊』(奎 18674), 『南陽府所在壯勇營田畓案』(奎 19347), 『咸鏡道端川府豆彦台牧場縮冊外壯勇營屯田新起尺量執負大帳冊』(奎 16454), 『平安道博川郡德安面七里境所在新屬壯勇營畓打量成冊』(奎 18675), 『壯勇營勾管博川郡東新筒築筒打量成冊』(奎 18677), 『壯勇營勾管博川郡德安面新築筒打量成冊』(奎 18678), 『平安道博川郡德安面南新筒伏在內需司壽進宮畓移屬壯勇營打量成冊』(奎 18676), 『鳳山郡沙院坊所在壯勇營纛田打量冊』(奎 18693), 『沙院坊所在壯勇營田畓改打量冊』(奎 18692), 『黃海道鳳山郡嵋山沙院坊所在壽進宮免稅田畓移屬壯勇營量案』(奎 18691), 『黃海道鳳山郡沙院坊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奎 18689), 『黃海道鳳山郡沙院坊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奎 18690), 『黃海道鳳山郡所在壯勇營嵋山屯新買田畓打量成冊』(奎 18688), 『黃海道鳳山郡嵋山屯水留坪田畓量案』(奎 18687), 『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冊』(奎 18547), 『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查正量案』(奎 18673), 『楊根郡所在壯勇營柴場四標成冊』(奎 18672), 『忠淸道恩津縣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奎 19343), 『全羅道臨陂縣所在壯勇營新屯畓改打量案』(奎 19346), 『平安道定州牧大明洞二里空中草兪家草蘆田及游泥新屬壯勇營打量成冊』(奎 18680), 『平安道定州牧大明洞下一里於靑草蘆田新屬壯勇營打量成冊』(奎 18679), 『平安道定州牧大明洞所在壯勇營勾管空中草新築筒打量成冊』(奎 18681), 『壯勇營勾管定州大明屯築筒打量成冊』(奎 18682), 『壯勇營勾管定州大明屯築筒打量成冊』(奎 18684), 『平安道定州牧所在管餉各筒畓移屬壯勇營改打量成冊』(奎 18683), 『壯勇營勾管定州大明屯築筒打量成冊』(奎 18686), 『壯勇營勾管定州牧沙筒打量成冊』(奎 18685), 『振威縣所在壯勇營移屬田畓打量成冊』(奎 18671), 『振威縣所在壯勇營移屬田畓打量成冊』(奎 18670),『振威縣所在壯勇營新屬粮餉廳田畓打量成冊』(奎 18669), 『忠州牧所在壯勇營所屬田畓及築堰田畓打量成冊』(奎 19344); 한편 『沙院坊所在壯勇營田畓改打量冊』(奎 18692)를 제외한 장용영 둔전양안 30건에 대해서는 '읍명·해당지역·설치방법·면적(결수, 두락수), 세액, 전거'를 표로 상세하게 정리한 송찬섭, 앞의 논문(2001), 112면, <부표>-장용영 둔전양안이 있는데, 송찬섭의 <부표>와 논문은 본 연구에서 장용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를 작성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48) 『南陽府所在壯勇營田畓案』(奎 19347).

건은 둔토를 매입한 후에 작성되었으며, 2건의 양안은 다른 둔토와의 교환을 앞두고 작성되었다. 장용영 둔토의 전체 면적은 전답 1,031.557결 및 柴場 周回 194里였는데, '평안도 398.806결, 황해도 343.778결, 경기도 264.223결 및 柴場 周回 194里, 충청도 9.854결, 함경도 9.101결, 전라도 5.795결'이었다.

장용영 양안의 작성이유에 대해 각 둔토의 결수 및 두락수(稅錢賭錢)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일반 전답이나 蘆田 등에 그리고 築筒하여 장용영 둔토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17건의 장용영 양안이 작성되었다. 우선 일반 전답에 신설된 장용영 둔토의 내용을 수록한 양안은 6건이었다. 1788년(정조 12) 작성된 충청도 충주목 장용영 양안의 거곡면 전답은 7결 30부 9속(築堰畓 84부 9속 포함)이었고,[49] 1790년 작성된 평안도 박천군 덕안면 七里의 장용영 양안의 답은 3결 79부 8속으로 25석 4두 8승락이었으며,[50] 1796년 작성된 은진현 장용영 양안에서 김포면과 화산면 등의 전답은 4결 71부 5속이었다.[51] 아울러 1793년 작성된 황해도 봉산군 沙院坊·土城坊 장용영 양안의 전답은 41결 51부 8속이었고,[52] 1797년 작성된 봉산군 媚山屯 水留坪 장용영 양안의 전답은 4결 71부 5속이었으며,[53] 1796년 작성된 전라도 임피현 양안의 답은 5결 79부 5속이었다.[54] 다음으로 蘆田 등에도 장용영 둔토가 설치되었다. 1788년 작성된 평안도 정주목 대명동 二里 장용영 양안의 노전과 游泥의 합은 197결 39부 9속으로 1,320석 10두 9승락이었고.[55] 같은 해 작성된 대명동 下一里 장용영 양안에서 蘆田은 1결 98부로 13석 8두 3승락이었다.[56] 아울러 1793년 작성된 황해도 봉산군 沙院坊 장용영 양안의 纛田은 99부 7속이었다.[57] 이어 새로 築筒하여 장용영 둔토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1790년 작성된 평안도 정주목 大明洞 1筒과 2筒의 장용영 양안에서 畓의 實結은 20결 8부 9속으로 133석 13두 9승락이었고,[58] 1791년 작성된 대명둔 築筒 장용영 양안에서 답은 19결 71부 4속으로 131석 6두 4승락이었으며,[59] 1792년 작성된 대명둔 築筒 장용영

49) 『忠州牧所在壯勇營所屬田畓及築堰田畓打量成冊』(奎 19344).
50) 『平安道博川郡德安面七里境所在新屬壯勇營畓打量成冊』(奎 18675).
51) 『忠淸道恩津縣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奎 19343),
52) 『沙院坊所在壯勇營田畓改打量冊』(奎 18692),
53) 『黃海道鳳山郡嵋山屯水留坪田畓量案』(奎 18687),
54) 『全羅道臨陂縣所在壯勇營新屯畓改打量案』(奎 19346).
55) 『平安道定州牧大明洞二里空中草兪家草蘆田及游泥新屬壯勇營打量成冊』(奎 18680).
56) 『平安道定州牧大明洞下一里於靑草蘆田新屬壯勇營打量成冊』(奎 18679).
57) 『鳳山郡沙院坊所在壯勇營纛田打量冊』(奎 18693).
58) 『平安道定州牧大明洞所在壯勇營勾管空中草新築筒打量成冊』(奎 18681).
59) 『壯勇營勾管定州大明屯築筒打量成冊』(奎 18682).

양안에서 답은 20결 20부 1속으로 168석 1승락이었고,[60] 1793년 작성된 대명둔 築筒 장용영 양안에서 답은 31석 36부로 209석 1두락이었다.[61] 그 밖에 1793년 작성된 정주목 沙筒 장용영 양안에서 답은 5결 85부 9속으로 39석 9승락이었으며,[62] 1789년 함경도 단천부 장용영 양안에서 豆彦台牧場의 축소된 울타리 밖의 新起田은 9결 10부 1속이었다.[63]

두 번째로 장용영 둔토의 이속과 관련하여 8건의 양안이 작성되었다. 1788년 작성된 경기도 가평군과 양근군 장용영 양안에는 각각 가평군과 戶曹 그리고 훈련도감으로부터 장용영에 이속된 柴場의 四標를 기재하였는데,[64] '가평군 冒火田畓은 59결 3부이고 稅錢은 608냥 1전,[65] 양근군 周回는 194里이며 火田稅錢은 457냥 5전[66]'이었다. 1789년 작성된 경기도 진위현 장용영 양안에서 수진궁·어영청·숙원방 등으로부터 이속된 전답은 39결 66부 7속이었고,[67] 1798년 진위현 장용영 양안은 1789년 작성된 진위현 양안과 동일 지역을 다룬 양안으로 전답은 51결 84부 1속이었으며,[68] 1800년 진위현 장용영 양안에는 훈련도감 糧餉廳에서 이속된 전답 72결 14부가 기재되었다.[69] 1792년 장용영 양안에는 평안도 정주목으로부터 장용영에 이속된 정주목 24筒 管餉畓 25결 28부 9속(297석 7두 3승락)이,[70] 1793년 작성된 황해도 봉산군 嵋山沙院坊 장용영 양안에는 이속되는 壽進宮 면세전답 122결 25부 6속이,[71] 1794년 평안도 박천군 덕안면의 南新筒 양안은 내수사와 수진궁으로부터 장용영에 이속된 답 60결 33부 2속이 표기되었다.[72]

세 번째로 장용영 양안은 다른 기관의 둔토와 교환하기 위해서도 작성되었다. 1793년 작성된 황해도 봉산군 沙院坊 장용영 양안과[73] 舍人房 장용영 양안[74]은, 내지 첫 면의 '壽進宮相換田畓量案'이라는 기록을 통해 수진궁 전답과 교환하기 위해

60) 『壯勇營勾管定州大明屯築筒打量成冊』(奎 18684).
61) 『壯勇營勾管定州大明屯築筒打量成冊』(奎 18686).
62) 『壯勇營勾管定州牧沙筒打量成冊』(奎 18685).
63) 『咸鏡道端川府豆彦台牧場縮柵外壯勇營屯田新起尺量執負大帳冊』(奎 16454).
64) 송찬섭, 앞의 논문(2001), 92면.
65) 『加平郡所在壯勇營柴場四標成冊』(奎 18674).
66) 『楊根郡所在壯勇營柴場四標成冊』(奎 18672).
67) 『振威縣所在壯勇營移屬田畓打量成冊』(奎 18671).
68) 『振威縣所在壯勇營移屬田畓打量成冊』(奎 18670).
69) 『振威縣所在壯勇營新屬粮餉廳田畓打量成冊』(奎 18669).
70) 『平安道定州牧所在管餉各筒畓移屬壯勇營改打量成冊』(奎 18683).
71) 『黃海道鳳山郡嵋山沙院坊所在壽進宮免稅田畓移屬壯勇營量案』(奎 18691).
72) 『平安道博川郡德安面南新筒伏在內需司壽進宮畓移屬壯勇營打量成冊』(奎 18676).
73) 『黃海道鳳山郡沙院坊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奎 18689)
74) 『黃海道鳳山郡舍人坊所在壯勇營屯田畓打量成冊』(奎 18690).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원방 장용영 양안의 전답 41결 25부 7속과 사인방 장용영 양안의 전답 86결 99부 4속은, 수진궁 소속이었다가 장용영에 이속된 황해도 봉산군 嵋山沙院坊 장용영 양안의 전답 122결 25부 6속과 교환되었다.[75]

네 번째로 장용영 양안은 장용영이 둔토를 買得한 후에도 작성하였다. 1794년 작성된 황해도 봉산군 嵋山屯의 장용영 양안에는 새로 매득한 전답을 타량한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實田은 1결 81부 6속이고 實畓은 4부 5속'이었다.[76]

한편 1827년(순조 27) 작성된 경기도 안산군[77]과 수원부의 장용영 양안[78]은, 장용영이 1802년(순조 2) 혁파된 뒤에 작성되었다. 전답이 4결 9부 2속인 안산군 둔토 및 전답이 32결 71부 5속인 수원부 장용영 둔토는 장용영이 혁파된 후 수원부에 속했는데,[79] 1827년에 양안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안산군 둔토의 소속처는 '糧餉廳→장용영→華營→선희궁(1896)→내장원(1901)'으로 변했고[80] 황해도 평산부 총리영 양안 1건도 1827년에 작성되었다[81]는 점을 감안하면, 1827년 안산군 장용영 양안을 작성한 것은 화성 총리영에 옛 장용영 안산군 둔토를 이속하기에 앞서 전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추측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장용영 양안은 다른 군영둔토 양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장용영 둔토는 '가평, 고양, 광주, 과천, 금천, 김포, 남양, 배봉, 수원, 시흥, 양주, 양근, 여주, 용인, 음죽, 이천, 전곶의 菜田, 지평, 파주' 등에 설치된 것[82]에 비해 양안은 8개라는 점에서, 장용영 양안도 장토문적이나 목장양안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양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內需司庄土文績』(奎 19303)의 38책 「黃海道信川郡加羅洞所在景祐宮提出圖書文績類」의 문서번호 62'에는, 1796년(정조 20) 작성된 『黃海道鳳山郡所在壯勇營乙卯新換屯田畓打量成冊』이 수록되어 있다. 이 양안은 1795년 새롭게 교환된 둔전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96년 작성되었으며, 전답은 9결 63부 5속(전 36부 7속, 답 9결 26부 8속)이었다. 아울러 1895년(고종 32) 작성된 경기도 목장양안에는 장용영 菜田이 수록되었다는 점[83]을 감안하면, 목장양안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75) 『黃海道鳳山郡嵋山沙院坊所在壽進宮免稅田畓移屬壯勇營量案』(奎 18691).
76) 『黃海道鳳山郡所在壯勇營嵋山屯新買田畓打量成冊』(奎 18688).
77) 『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査正量案』(奎 18673).
78) 『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冊』(奎 18547).
79) 『純祖實錄』권4, 2년 9월 庚辰, 47책 438면.
80) 『國有地調査抄』, 別表, 京畿 安山 壯屯.
81) 『黃海道平山府方洞面所在摠理營田畓改打量成冊』(奎 18746).
82) 송찬섭, 앞의 논문(2001), 96~97면.
83) 『京畿牧場量案』(奎 19124-v.1).

3) 평신진 · 수영 양안

조선후기 수군은 해안방어는 물론이고, 漕運船의 호송이나 섬의 搜討 등을 담당하였다. 충청도 수군 鎭의 하나인 平薪鎭은 장용영 외영과 총리영에 소속되어 수원유수부의 海防을 담당하였고, 忠淸水營과 전라좌수영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이후 서양 제국주의 열강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포수를 육성하였다. 여기에서는 평신진 양안과 충청 및 전라좌수영 別砲衛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평신진[84] 및 충청수영[85] · 전라좌수영[86]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 군영명칭	둔토의 설치지역	작성 년도	작성 이유	결수	두락수
평신진	충청도 서산군 대산면	1795	신설	488.030	
	충청도 태안군 이원면, 면천군 창택면	1795	신설	태안군 211.400 면천군 48.533	
	충청도 서산군 대산면	1803	이속	488.030	
	충청도 면천군 창택면	1803	이속	48.533	
충청수영	충청도 보령현·홍주목·결성현	1871	신설	9.943	13석 10두락
전라좌수영	전라도 여수의 宗浦 등	1883		34.860	1,059두락

우선 평신진 양안의 실태와 작성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평신진은 1711년(숙종 37) 서산군 대산면에 위치한 亢金鎭을 대산면 平薪으로 옮기고 첨절제사의 명칭도 평신첨사로 바꾸면서 설치되었으며,[87] '보령현 水營,[88] 태안군 소근진·안흥진,[89]

84)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鎭大山面量案』(K2-3250),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忠淸道平薪鎭倉宅面量案』(K2-3252).

85) 『忠淸水營別砲衛畓庚午條量案』(K2-3253).

86) 『別砲衛分畓草案』(奎 19681).

87) 『肅宗實錄』 卷 50, 37년 5월 丙辰, 40책, 398면 ; 『忠淸道邑誌(英祖~憲宗年間)』39, 平薪鎭誌, 沿革, 設鎭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7: 충청도①』, 아세아문화사, 509면 ; 『湖西邑誌(1871년)』, 瑞山郡, 平薪鎭誌, 沿革, 設鎭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6책, 瑞山, 平薪鎭, 아세아문화사, 282면.

88) 『湖西邑誌(1871년)』, 保寧, 水軍節度營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비인군 마량진,[90] 서천군 서천포[91]'와 함께 충청도 서해안 방어를 비롯하여 護漕·搜討·禁松 등의 임무도 수행하였다.[92] 그러다가 1794년(정조 18) 서산군·태안군·면천군의 목장이 혁파되고 평신진둔이 설치되었으며, 평신진이 장용영 외영에 移屬되면서 평신첨사는 장용영 屯牙兵 別中司의 把摠을 새로 담당하게 되었다.[93] 이러한 조치는 평신진에 둔토를 설치함으로써 경작권을 매개로 평신진 군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평신진 둔전의 稅米를 통해 장용영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서각에 소장된 평신진 양안 4건 중 2건은 평신진 둔토가 신설된 이듬해 즉 1795년에 折衝將軍行平薪鎭水軍僉節制使金(就明)이 작성하였는데,[94] 둔토의 전답 면적은 '서산군 대산면 488.030결, 태안군 이원면 211.400결, 면천군 창택면 48.533결'이었다. 이어 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되고 수원에 총리영이 설치되고, 평신진이 총리영에 이속되면서 1803년 평신진 양안 2건이 추가로 작성되었다.[95] 이때의 평신진 양안은 1795년 작성된 평신진 양안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다만 동일한 사람의 이름인데도 '卜水를 福水로 그리고 下星을 夏星'으로 표기하는 등의 차이가 보인다. 한편 평신진 둔토는 1895년 을미개혁으로 총리영과 평신진이 혁파된 후 둔토가 위치한 서산군 등에 환속되었다가,[96] 1898년 선희궁을 거쳐[97] 1899년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98]

물론 수군 鎭의 양안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군영둔토 양안과 마찬가

738~739면.

89) 『湖西邑誌(1871년)』, 泰安, 鎭堡 및 安興鎭城池 및 所斤鎭鎭誌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71면·675~677면.

90) 『湖西邑誌(1871년)』, 庇仁, 馬梁鎭誌與事例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1616면.

91) 『忠淸道邑誌(英祖~憲宗年間)』, 舒川, 鎭堡, 舒川浦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7: 충청도①』, 아세아문화사, 464면.

92) 『湖西邑誌(1871년)』, 瑞山郡, 平薪鎭誌, 軍器沿革, 軍器, 一防船軍器·二防船軍器·卜物船軍器·伺候船軍器·餘軍器秩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邑誌8: 충청도②』, 6책, 瑞山, 平薪鎭, 아세아문화사, 283~284면.

93) 『忠淸道邑誌(영조~헌종년간)』39, 平薪鎭誌, 官職, 僉使一員(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7: 충청도①』, 39책, 平薪鎭, 509면).

94)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95) 『忠淸道平薪鎭大山面量案』(K2-3250), 『忠淸道平薪屯倉宅面量案』(K2-3252).

96) 『各部郡來牒』(奎 19146), 4책, 책발신자 의정부참정내부대신 이건하, 수신자 내장원경림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 발신일 1901년 3월 19일.

97)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奎 17877), 2책, 발신자 의정부참정궁내부대신서리궁내부협판 윤정구, 수신자 의정부찬정탁지부대신 박정양, 발신일 1898년 12월 21일.

98) 『訓令照會存案』(奎 19143), 5책, 발신자 내장원경 이용익, 수신자 서산군수 이계규, 1899년 12월 25일.

지로 각도공토안·장토문적·목장양안 등을 주의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1896년(고종 32) 농상공부가 작성한 각도공토안에는 비인군 馬梁鎭 양안[99]과 비인진 소속인 서천포진의 양안[100]이 수록되어 있어, 마량진 둔토의 實起結 3결 36부 4속과 서천포진의 둔토 1결 99부 3속 등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육군의 鎭이지만 전답의 합이 130두 5승락의 『聞慶鳥嶺鎭屯田畓量案』이 '『慶尙道庄土文績』(奎 19302)의 9책 「慶尙北道聞慶郡所在庄土金斗漢提出圖書文績類」의 문서번호 62'에 수록되었고, 목장에 수군 진이 설치되거나 평신진둔처럼 목장이 혁파되고 둔전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수영 양안은 別砲衛에게 급료로 지급되었던 屯畓과 관련하여 忠淸水營 1건[101] 및 全羅左水營 1건[102]이 작성되었다. 1866년(고종 3) 丙寅洋擾가 끝난 후 조선 정부는 서양세력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鎭撫營과 지방에 砲軍을 증설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전라좌수영 別砲衛 100명과 충청수영 別砲衛 25명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각각 1870년 閏 10월과 1871년 3월 12일에 설치되었다.[103]

1871년(고종 8)에 작성된 충청수영 양안은, 1871년 3월 12일 충청수영에 설치된 별포위 25명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保寧縣·洪州牧·結城縣의 답에 대해 '자호·지번·지목·결부·야미수·두락·장광척·사표·작인성명' 등을 기재한 것이다. 세 고을 답의 전체 결수는 9결 94부 3속이며 두락수는 3석 10두락이었는데, '보령현은 답 6결 36부 3속으로 8석 18두락, 홍주목은 답 1결 75부로 2석 5두락, 결성현은 1결 83부로 2석 7두락'이었다.

1883년(고종 20) 작성된 전라좌수영 양안은, 1870년 윤 10월 전라좌수영에 설치된 별포위 100명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순천부 여수면 宗浦 등에 위치한 별포위 分畓의 '被分畓人姓名·들판명·자호·지번·결부·두락·야미수·작인성명'등을 기재한 것이다. 별포위분답 결수의 합은 34결 86부이었고, 두락수 합은 1,059두락이었다.

---

99)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19282-v.7),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11).

100)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17),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8).

101) 『忠淸水營別砲衛畓庚午條量案』(K2-3253).

102) 『別砲衛分畓草案』(奎 19681).

103) 丙寅洋擾 후 鎭撫營 및 지방 砲軍의 증설에 대해서는 연갑수, 2001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54~185면·265~273면 ; 배항섭, 앞의 책(2002), 56~116면 ; 서태원, 2009 「병인·신미양요 후 진무영의 포군 강화와 심도포량미」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인천지역 재정사 연구』, 인천학연구원이 참고가 된다.

한편 수영 양안도 각도공토안에서 추가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896년 작성된 홍주부 홍주군의 폐지된 수영 養兵畓 양안에서, 답의 결수는 2결 82부 9속이고 두락수는 3석 7두 7승락이었다.[104]

4) 총리영·총위영·무위소·친군영·통위영 양안

총리영·총위영·무위소·친군영·통위영은 19세기 창설된 중앙군이다. 총리영은 수원유수부와 도성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였고, 총위영과 무위소는 국왕 친위병의 성격이 강했으며, 친군영과 통위영은 국왕의 호위와 도성의 수비를 수행하였다. 총리영·총위영·무위소·친군영·통위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총리영[105]·총위영[106]·무위소[107]·친군영[108]·통위영[109] 양안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 군영명칭	둔토의 설치지역	작성 년도	작성 이유	결수	두락수 (日畊數, 賭地)
총리영	황해도 평산부 방동면	1827			전 55두 19두 6승락 답 27석 3두 1승락
총위영	전라도 전주부	1847	신설	2결 22부 6속 (許卜蕩減秩)	50두 5승락 (冒耕面積)
	전라도 전주부·익산군	1847	신설		
무위소	경상도 김해부	1875	신설	蘆田 5결 25부	1,059두락
친군영	평안도 함종부	1887	신설		(1,355일경 5척) (도지 2천 3냥 8푼)
	경기도 강화부	1888	신설	전답 18.123	50석 9두락 (도지 16석 2두)
통위영	경기도 진위현·양성현	1881 (?)			

104)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24),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16).

105) 『黃海道平山府方洞面所在摠理營田畓改打量成冊』(奎 18746).

106) 『全羅道全州府所在總衛營屯土所屬回浦面助沙里利東面馬峴里倉底民虛卜白骨蕩減及孔德堤冒耕畓作者成冊』(奎 19345), 『全羅道全州府益山郡所在總衛營屯畓量案』(奎 19352).

107) 『慶尙道金海府所在武衛所蘆田打量成冊』(K2-3107).

108) 『咸從府所在親軍海防營草田定賭地量案』(奎 18285), 『江華府佛恩面所在田畓結卜斗數量案』(奎 18554).

109) 『統衛營田畓改尺量』(奎 16368).

첫 번째로 총리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총리영은 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된 후 수원부에 설치되면서 수원유수부 및 도성 외곽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수원유수가 겸임한 정2품 摠理使를 비롯하여 '中軍(1)·從事官(1)·別驍將(2)·把摠·斥堠將(1)·哨官(25)·敎鍊官(8)·知殼官(10)·別軍官(100)·守堞軍官(12)·別驍士(200)' 등이 소속되었다.[110] 아울러 1802년 군제가 釐正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장용영 외영소속이었던 용인·안산·시흥·과천의 군병 4哨가 수어청에 환속되지 않고 임시로 수원부 즉 총리영에 남겨졌다.[111]

총리영 둔토는 황해도 평산부 방동면에 위치하였다. 1827년 작성된 총리영 양안 表紙의 '宣禧宮量案十三卷'이라는 기록을 통해, 1895년 摠理營이 폐지된 뒤 그 둔토가 1896년 宣禧宮으로 이속되어 1901년 內藏院으로 넘겨지기까지 宣禧宮 소속 屯土였음을 보여준다.[112] 元帳付 畓의 합은 27석 3두 1승락이었고, 田의 합은 55석 19두 6승락이었다. 아울러 追付田畓 2결 74부 2속 가운데, 田은 1결 47부 9속 그리고 畓은 1결 26부 3속이었다.

한편 총리영 양안은 1건이나, 장용영이 혁파된 후 충청도 평신진이 총리영에 이속되면서 1803년 평신진 양안 2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리영 양안은 3건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총위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총융청이 궁궐숙위를 하게 되면서 廳과 총융사의 명칭을 營과 총위사로 고친 다음, 영내의 군무와 각종 文簿 등을 壯勇營의 예를 따르게 함으로써 1846년(헌종 12) 총위영은 창설되었다.[113] 1849년까지 존속한 총위영에는 내영·외영군 및 北漢所管 외영군으로 구성된 10,538명이 소속되었으며,[114] 총위영은 국왕친위병으로써 궁궐 숙위와 도성외곽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1846년 총위영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전주부와 전주부·익산군 총위영 양안은, 둔토의 신설 후 토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847년 작성하였다고 생각된다. 전라도 전주부에 위치한 총위영 양안의 虛卜蕩減秩에는 전답 2결 22부

110) 『大典會通』 卷4, 兵典, 京官職, 摠理營.

111) 『純祖實錄』 卷4, 2년 2월 戊申, 47책, 424면 ; 장용영 혁파 후 병력의 각 군영으로의 환속에 대해서는 이태진, 앞의 책(1977), 226~228면이 참고가 된다.

112) 『黃海道平山府方洞面所在摠理營田畓改打量成冊』(奎 18746).

113) 『備邊司謄錄』 233冊, 憲宗 12년 8월 12일, 23책, 719면, 「總衛營節目」 "一, 摠戎廳 既爲宿衛 則廳號不可不以營爲號 以總衛營改號 仍舊以總衛使 稱之爲白乎矣 凡係營內事務及各樣文簿等處 依壯勇營已例 皆以大將書之 印信卽令新造後 舊印還收事 分付禮曹爲白齊" ; 최효식, 1995 「總衛營」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 배항섭, 앞의 책(2002), 32~38면.

114) 최효식, 앞의 책(1995), 194~208면.

6속이 그리고 孔德堤冒耕秩에는 冒耕 면적의 합 50두 5승락과 함께 孔德堤의 지도를 그려 村家와 '打點者冒耕·年久伏沙貯水不多·新築貯水處' 등을 표시하였다.[115] 아울러 같은 해 작성된 全羅道 全州府 11개 및 익산군 1개 면 답의 합은 132결 73부 2속으로 176석 8두 1승락이었으며, 도조는 1,395석 3두 8승이었다.[116]

세 번째로 무위소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무위소는 정조대 장용영이나 헌종대 총위영처럼 고종이 친위병을 강화하기 위해 1874년(고종 11) 창설하여 1881년 무위영에 통합될 때까지 존속되었고, 1880년 무렵에는 총 병력이 4,339명에 이르렀다.[117] 경상도 김해부의 무위소 양안은 무위소가 신설된 이듬해에 蘆田을 타량하여 작성한 양안으로, 주인이나 작인을 표기하는 자리에는 守直人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노전의 합은 5결 25부로 1,059두락이었다.[118]

네 번째로 친군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친군영은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창설되어, 국왕의 시위 및 궁궐파수와 도성수비 등을 담당하였다. 1883년 6월 훈련도감의 부속기관이었던 糧餉廳을 친군영이라고 부르며 친군좌우영의 군수품을 지원하게 하였고, 1884년 前(1,174명)·左(504+병정)·右(1,635명)·後(1,198명)·別營(2,288명)의 5營 체제를 갖추었으며, 1886년 친군해방영을 그리고 1887년 강화도의 군영을 親軍沁營으로 삼는 등 친군영체제를 확대하였다.[119]

친군영 양안은 규장각에 2건 소장되어 있다. 먼저 함종부 소재 친군해방영 양안은 1886년 친군해방영이 설치된 이듬해에 草田의 賭地를 定하기 위해 작성된 양안인데, 초전의 전체 日耕數의 합은 1,355일경 5척 그리고 賭地는 2천 3냥 8푼이었다.[120] 그런데 표지 뒷면의 '明禮宮 戊子九月日'이란 표시로 보아 草田을 다음해인 戊子(1888년)에 明禮宮으로 이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친군해방영이 1888년 4월 군제개편 때 통위영에 통합[121]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1888년 작성된 강화부 불은면 양안은 1887년 신설된 親軍沁營의 불은면 전답에 대해 결부·두락·賭地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부의 합은 18결 12부 3속이고 두락의 합은 50석 9두락이며, 賭地의 합은 16석 2두였다.[122]

---

115) 『全羅道全州府所在總衛營屯土所屬回浦面助沙里利東面馬峴里倉底民虛卜白骨蕩減及孔德堤冒耕畓作者成冊』(奎 19345).
116) 『全羅道全州府益山郡所在總衛營屯畓量案』(奎 19352).
117) 배항섭, 앞의 책(2002), 117~150면·179~181면.
118) 『慶尙道金海府所在武衛所蘆田打量成冊』(K2-3107).
119) 배항섭, 앞의 책(2002), 181~237면.
120) 『咸從府所在親軍海防營草田定賭地量案』(奎 18285).
121) 『高宗純宗實錄』中(『高宗實錄』 二) 卷 25, 25년 戊子 4월, 19일, 2책, 293면.

한편 친군영 양안은 1896년에 작성된 각도공토안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度支部乙未條陞摠에서 전답이 6.065결이었던 홍주부 홍주군 親軍營 양안을 비롯하여,[123] '實結이 1.307결인 홍주부 정산군 親軍糧餉廳 양안,[124] 전답이 1.049결로 1석 12두 5승락인 홍주부 서천군 前親軍營 양안,[125] 전답이 0.311결인 홍주부 대흥군의 친군영 양안,[126] 度支部乙未條陞摠에 비해 1896년에는 0.091결이 증가하여 起畓이 0.507결이며 14두락의 도전 합이 28냥인 홍주부 비인군의 前糧餉廳 양안,[127] 전답의 합이 28.190결로 44석 4승락인 홍주부 보령군 前親軍營 양안[128]'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1896년 작성된 '嘉山과 博川 경계의 위치한 親軍營 둔전의 일경수 241일 1시 半畊 및 도전 157냥 6전 8푼 등을 수록한 성책,[129] 박천군 친군영 둔답의 전체 두락수 62석 14두 9승락 등을 기재한 성책,[130] 평안북도 정주군 둔답 24석 14두 3승락 등을 수록한 성책'[131] 등도 친군영 둔토와 관련해서 참고가 된다.

다섯 번째로 통위영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통위영은 1888년 친군영 우영·후영·해방영이 통합된 군영으로, 친군영 전영·좌영을 통합한 壯衛營 및 친군영 별영이 변한 摠禦營과 함께 중앙군으로써 국왕의 시위와 도성의 방어 등을 담당하였다. 친군영 5영을 통위영·장위영·총어영의 3영으로 개편한 것은, 軍額에 비해 營號는 많고 規制가 일정하지 않아 군병을 정예롭게 훈련시키거나 후하게 대우해줄 수 없는 당시 軍制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132]

---

122) 『江華府佛恩面所在田畓結卜斗數量案』(奎 18554).

123)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22),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14).

124)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12),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28).

125)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17),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22).

126)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13),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17).

127)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5),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27).

128)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2-v.20), 『宮內府洪州府管下各郡屯田畓改正量案』(奎 19283-v.10).

129) 『嘉山博川交界所在親軍營各洞斗落日耕打穀四標及作人姓名成冊』(奎 22080)

130) 『前親軍營屯舊博川境所在宮內府內藏院句管各峒落數庫數卜數秋收及作人姓名成冊』(奎 22084).

131) 『定州郡所在親軍營屯土田畓斗數結數及作人姓名成冊』(奎 20537).

132) 『高宗純宗實錄』中(『高宗實錄』 二) 卷 25, 25년 戊子 4월, 19일, 2책, 293쪽, "敎曰 軍制者 因時措置 隨便增革 求適於用而已 其爲關係之重 急先之務 莫此爲大 現今軍額未夥 而營號爾多 規制不一 而接濟愈繁 旣未得精鍊 又無以厚養 宜思所以變通之道 只置三營 合右營後營海防營 稱之以統衛營 合前營左營 稱之以壯衛營 別營稱之以總禦營 凡所節制與規式 各營將臣 就議總理大臣 成節目以入"

통위영 양안은 경기도 양성현의 九萬里面·所古尼面·金谷面·盤谷面 등과 진위현 丙坡面에 위치한 통위영 전답의 결부와 도조 등을 표기한 것인데, 양성현 구만리면의 전 92부 9속 및 답 6결 53부 8속을 비롯하여 진위현 병파면의 전 34부 2속 등이 기재되었다.[133] 아울러 비록 표제에 1881년을 의미하는 辛巳가 표기되어 있지만, 통위영은 1888년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1881년에 양안이 작성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양안을 작성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군영둔토 양안은 둔토의 수에 비해 매우 적지만, 기존의 군영이 폐지된 후에 작성된 각도공토안을 비롯하여 장토문적이나 목장양안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보다 많은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장용외영과 총리영 그리고 훈련도감과 친군영처럼 역할도 비슷하고 앞의 군영이 폐지된 후 설치된 군영의 경우, 둔토가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 쪽의 양안을 활용하면 군영둔토 양안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군영둔토 양안의 기재에서 나타난 특징

1) 折과 冒

군영둔토 양안 중 충청도 평신진 양안과 가평군 장용영 양안 등에는 둔토가 성립될 당시 토지의 성격을 파악해 줄 수 있는 '折과 冒'가 양안에 기재되어 있다. 평신진 양안의 기재사항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133) 『統衛營田畓改尺量』(奎 16368).

표 6 평신진 양안의 기재사항[134]

지번·양전방향·전품·전형·지목	장광척	결부	四標	陳起 표기	旧今 표기	작인·주인명	冒折 표기
第四十四南犯六等直田	東長陸拾尺 廣肆拾肆尺	陸負陸束	東山南宗會田 北自老田	起	旧今	世贊	折
第四十五北犯六等直田	東長參拾尺 廣參拾肆尺	貳負貳束	三方山 北世贊田	起	旧今	巡堤	冒
第四十六南犯六等直田	東長肆拾尺 廣參拾尺	參負	三方山 北世贊田	起	旧今	奉金	冒

즉 1803년 작성된 『충청도평신진대산면양안(下)』(K2-3250) 의 玉字 자호 다음에 '지번·양전방향·전품·전형·지목·장광척, 결부, 사표, 진기, 구금, 작인·주인명, 冒折' 등이 표기되었는데, 특히 다른 양안에서 잘 기재되지 않는 折과 冒가 주목된다. 여기서 折은 折受를 뜻하고, 冒는 가평군 장용영 柴場四標成冊의 已以과 都已上에 기재된 冒耕田畓·冒火田畓 및 自首加耕田畓[135] 등을 감안할 때 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火田·陳田 등의 토지를 경작하다가 발각되어 붙여진 명칭으로 생각된다.

목장의 경우 內場은 목장과 목장위토로 구성된 官有地이고, 外場은 牧官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민결을 획급하거나 민들이 자비로 개간한 뒤 목장에 결세를 납부하는 무토면세결로 사실상 민유지로 인정받았다.[136] 평신진둔은 목장을 혁파하고 설치된 둔토였다. 따라서 평신진 양안의 작인·주인명 아래에 기재된 折은 민결을 의미하거나, 민들이 자기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합법적으로 개간한 다음 목장에 결세를 납부한 토지였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折 즉 折受畓을 경작하는 둔민에게는 米 10斗와 錢 4냥(1냥은 3두) 즉 민유지의 米 23두(租 100두)와 유사하게 세금을 징수하였고,[137] 冒로 표기되었던 冒耕畓의 경작자는 불법으로 목장토를 경작하였으므로 米 66斗를 징수하는 차등을 보였던 것이다. 아울러 <표 6>의 작인·주인명 아래에 折로 표시된 世贊은 지번

134) 『忠淸道平薪鎭大山面量案』(K2-3250),
135) 『加平郡所在壯勇營柴場四標成冊』(奎 18674)
136) 배영순, 1985 「조선토지조사기간의 국유지분쟁에 있어서 소유권의 정리방향」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27~129면 ; 김양식, 앞의 책(2000), 95~98면.
137) 박준성, 앞의 논문(1984), 248면.

45와 46의 사표에서 북쪽 田 소유자로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양안상으로는 토지 소유자로 간주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양안에서 冒屬과 折受를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진둔이 설치된 후 몇 년 만에 정부는 冒와 折을 구분하지 않고 매결 45斗를 징수하려 하였다. 이에 절수답을 경작하는 둔민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원목장이 혁파된 후 평신진의 둔토가 설치된 고을의 수령인 태안군수도 둔민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폐해를 지적하면서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하였던 것이다.[138] 이렇게 절수답을 경작하던 둔민의 불만이 계속 표출되자 정부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절수답과 모경답은 조세나 소유권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有土公畓의 稅는 民畓과 다르지만 평신진은 토지가 척박하고 소출이 적은데 비해 役이 중하였으므로 둔민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 세금을 감해주자는 前 충청감사 윤광언의 견해를 정부가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었다.[139]

실제로 공토에 민결을 획급했거나 민들이 노동력과 자본을 들여 합법적으로 목장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둔민과, 평신진둔은 공토이고 그 이전의 목장토도 공토이므로 소유권을 인정한 어렵다는 정부의 견해차는 대한제국기에 다시 충돌하게 된다. 즉 내장원이 평신진둔을 공토화하려고 하자, 평신진 둔토의 소유자들은 賭地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집회를 열어 저항하였다. 이에 내장원은 한편으로는 순검으로 하여금 평신진둔 소유권반환투쟁의 주모자를 체포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두락 답 3두 5승의 도지를 1두 5승으로 인하해주는 정책으로 투쟁을 진정시킨 바 있다.[140]

2) 自作

군영둔토는 소작인은 물론이고 군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영둔토 양안에는 작인 난에 성명이나 이름이 표기되었을 뿐이고, 그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인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883년 전라좌수영의 『別砲衛分畓草案』에는, 작인 난에 自作이 표기되어 있어 실제 군인이 별포위답을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138)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3월, 19책, 423~424면.

139) 실제로 정부는 冒耕畓을 별도로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1901년 전라남도 고창군 소재 堤堰冒耕畓을 조사하여 도지액을 정하려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全羅南道高敞郡所在冒耕畓調査定賭成冊』(奎 20441)).

140) 김양식, 앞의 책(2000), 100~107면.

별포위답은 포수인 별포위에게 급료로 제공되는 畓인데, 별포위는 1866년 병인양요 때 外邑砲手가 강화도 정족산성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자[141] 정부가 전쟁이 끝난 후 강화도 방어를 담당한 진무영 및 전국에 砲軍을 증강하면서 생긴 군인이다. 그리하여 전라좌수영 별포위 100명이 1870년 윤 10월에 설치된 것[142]을 비롯하여 충청수영에도 1871년 3월 12일 별포위 25명이 선발되었다.[143] 전라좌수영의 『別砲衛分畓草案』을 통해 군인이 스스로 둔토를 경작한 사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전라좌수영 별포위의 자작 사례[144]

성명	自作		전체면적
	들판명, 자호, 지번	면적	
차만천	毛丁坪, 禍字, 101·102·104, 202	15부 2속, 6두락	37부 2속, 10두 4승락
김영안	德大坪, 堂字, 58·76·77	5부 4속, 2두락	38부 4속, 10두 4승락
	毛丁坪, 因字, 47	14부 3속, 3두락	

즉 1883년에 작성된 전라좌수영 『별포위분답초안』에는 별포위 100명의 성명과 들판명·자호·지번·결부수·두락수·야미수·작인명' 등이 기재되었다. 특히 작인의 성명은 '작+성명, 작+성명+성명, 성명+작'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별포위 차만천과 김영안이 분급받은 답의 일부를 自作하고 있다고 양안에 표기된 점이다. 차만천의 경우 전체면적 37부 2속(10두 4승락) 중에서 '毛丁坪, 禍字, 지번 101·102·104·202'의 답 15부 2속(6두락)을, 그리고 김영안은 전체면적 38부 4속(10두 4승락) 중에서 '德大坪, 堂字, 지번 58·76·77' 및 '毛丁坪, 因字, 지번 47'의 19부 7속(5두락)을 스스로 경작하였다. 군영둔토를 군인 스스로 경작하였음을 나타내는 군영둔토 양안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전라좌수영 『별포위분답초안』에서의 자작 표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한편 『별포위분답초안』을 통해서 볼 때 전라좌수영의 별포위는 10두락~11두락 정도의 답을 급료로써 제공받았는데, 10두락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141) 정족산성전투와 관련해서는 『丙寅日記』·『鼎足山城接戰事實』 등의 자료를 비롯하여 김원모, 1983 「로즈艦隊의 來侵과 梁憲洙의 항전(1866)」 『동양학』13 ; 김원모, 1992 『근대한미관계사』, 철학과현실사, 275~328면 ; 양교석, 1985 「병인양요의 일고찰」 『사총』29, 26~32면 ; 서태원, 앞의 책(2009), 103~111면 등이 참고가 된다.

142) 배항섭, 앞의 책(2002), 111면.

143) 연갑수, 앞의 책(2001). 265면 ; 배항섭, 앞의 책(2002), 109면.

144) 『別砲衛分畓草案』(奎 19681).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및 양안의 기재에서 나타난 특징을 '折·冒 및 自作'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에 대해 '군영의 명칭·작성년도(수)·해당지역(수)·소장처(수) 및 작성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1709~1888년 군영둔토 양안의 수는 5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용영 31건을 비롯하여 '훈련도감 3건, 총융청 3건, 수어청 1건, 평신진 4건, 수영 2건(충청수영 1건, 전라좌수영 1건), 총리영 1건, 총위영 2건, 무위소 1건, 친군영 2건, 통위영 1건'이었다. 작성연대를 알 수 없는 것 2건을 제외한 49건의 군영둔토 중 '1709~1799년 34건, 1800~1888년 15건'이 작성되었다. 군영둔토가 위치하였던 도는 황해도 14곳을 비롯하여 '평안도 13곳, 경기도 10곳(수원 및 강화유수부 포함), 충청도 8곳, 전라도 4곳, 경상도 1곳, 함경도 1곳'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 군영둔토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군영둔토 양안은 규장각에 45건 그리고 장서각에 6건이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1808년(순조 8) 편찬된 『만기요람』의 군영 둔토는 '훈련도감 17곳, 어영청 10곳, 총융청 둔전 25곳'이고 1779년 수어사 서명응이 수어청 둔전 29곳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훈련도감 양안 3건, 총융청 양안 3건, 수어청 양안 1건, 어영청 양안 0건'은 둔토에 비해 양안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장용영 등의 군영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군영둔토 양안을 더 찾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규장각의 자료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토문적에는 훈련도감과 장용영 양안을 비롯하여 조령진 등의 양안이 다른 문서와 함께 섞여 있었고, 1896년 각도공토안에는 친군영을 비롯하여 수어청·마량진·서천포진 등의 양안이 수록되었다. 아울러 목장이 군영에 소속되거나 목장을 혁파하여 둔전을 설치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목장양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후기 군영둔토 양안을 작성한 이유는 둔토의 '신설, 이속, 교환, 매입' 등과 관련하여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군영둔토 양안의 수가 가장 많은 장용영의 경우, 양안의 작성 이유는 '신설 17건, 이속 8건, 교환 2건, 매입 1건'이었다.

둘째 군영둔토 양안의 기재양식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折과 冒, 自作' 표기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충청도 평신진 양안의 주인명이나 작인명 아래에 기재된 折은 折受를 뜻하며, 冒는 불법으로 토지를 경작하다가 발각된 토지에 붙여

진 명칭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평신진 양안의 折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토에 민결을 획급했거나 민들이 노동력과 자본을 들여 합법적으로 목장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은 것이므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둔민은 생각하였으나, 정부는 평신진둔은 공토이고 그 이전의 목장토도 공토이므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때문에 평신진둔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冒와 折을 구분하지 않고 매결 45斗를 징수하려다가 절수답 경작자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대한제국기에 내장원이 평신진을 공토화하려 하였을 때 둔토의 소유자들은 賭地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집회를 열어 저항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작인 난의 自作 표기가 주목된다. 군영둔토는 소작인은 물론이고, 군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안은 작인 난에 성명이나 이름이 표기되어 있을 뿐, 그 사람이 군인인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인이 직접 전답을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883년 전라좌수영 別砲衛 100명의 급료로 10두락 정도의 답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된 별포위 양안에는, 작인 난에 작인의 성명은 물론이고 自作이 표기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군인이 둔토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제어 : 군영둔토, 양안, 장용영, 절(折), 모(冒), 자작

접수일(2010. 8. 31), 심사시작일(2010. 9. 3), 게재확정일(2010. 9. 10)

<Abstract>

A study of Gunyoung-Dunto and the land survey registe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Seo, Tae-won *

Gunyoung-Dunto(軍營屯土) means the land formed by the military camp reclaiming and cultivating wasteland, Jinjeon(陳田), etc. and which was appropriated for military supplies. Gunyoung-Dunto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installed in 14 places of Hwanghae-do(黃海道), 13 places of Pyeongan-do(平安道), 10 places of Gyeonggi-do(京畿道), 8 places of Chungcheong-do(忠淸道), 4 places of Jeolla-do(全羅道), 2 places of Gyeongsang-do(慶尙道), and 1 place of Hamgyeong-do(咸鏡道). At present, 51 Gunyoung-Dunto land survey registers(量案) are kept in a storage in Kyujanggak(奎章閣) and Jangseogak(藏書閣) and the number of Jangyongyoung(壯勇營) land survey registers was most as 31. As to Gunyoung-Dunto land survey register, 34 registers in 1709~1799 and 15 registers in 1800~1888 were made, and the time 2 registers were made is not known.

The reason that Gunyoung-Dunto land survey registers were made was to exactly grasp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land with regard to Dunto, established, transferred to another facilities, purchased and exchanged; Dunto the main management agent of which has changed by abolition or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camp; Dunto cultivated or reclaimed by doing Jeolsu; etc.

What is noted in the mark of the land survey registers is 'Jeol(折)', "'Mo(冒)', 'Jajak(自作)' etc. The Jeol mentioned under the name of tenants of the Chungcheong-do Pyeongsinjin(平薪鎭) land survey register means Minkyul(民結) or the land legally cultivated by the people investing their labor and capital, Mo means the land discovered while the people secretly cultivate Jinjeon, Hwajeon(火田), etc. without approval of the authorities. The Jajak that was written in Byeolpowidab(別砲衛畓)

* lecturer, Mokwon University

tenant column of JeollaJwa-Suyoung land survey registers was significant in that it mentioned that the soldiers directly cultivated a rice paddy.

Key Words : Gunyoung-Dunto, land survey registers, Jangyongyoung, Jeol, Mo, Jajak